

의안번호	제 27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2년 9월 7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7
----------	----

제출연월일 : 2022년 9월 7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2022. 3. 25. 시행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 근거 (안 제2조)
- 도지사와 사회서비스원의 원장 사이의 성과계약(경영목표, 권한과 책임, 보수 등) 체결 및 평가 등 (안 제3조, 제4조)
- 충청북도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신분 및 수당 지급 등 (안 제5조~제11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취 : 붙임

6. 비용추계서 : 붙임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이하 “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한다.

제3조(성과계약) ① 법 제2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당사자는 도지사과 사회서비스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성과계약서에 각각 서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② 도지사과 원장이 체결하는 성과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기간
2. 경영 목표
3. 원장의 권한과 책임
4. 보수
5. 보수책정 시 각종 평가 결과 반영 방식 및 배점기준
6. 겸직제한 및 퇴직 후 취업제한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충청북도 정책,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성과계약 등 평가의 활용)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장의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이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일부의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2. 법 제34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
3. 법 제34조에 따른 업무성과의 평가 결과

제5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보건복지국장과 행정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도지사가 서비스원과 관련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정책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정책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을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원장은 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고려하여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 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정책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정책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정책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정책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간사) ① 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사회서비스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수업 수행

2. 비용 발생 요인

- 사회서비스원 기본재산 출연
-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사업수행 지원

3. 관련조문

- 안 제2조(설립)

4. 비용 추계결과

추계의 전제	추계 결과	재원조달방원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제2조)	9,386백만원	
① 사회서비스원 기본재산 출연	100백만원	도비 100%
② 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사업 지원	9,268백만원	국비 50%, 도비 50%
③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18백만원	도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백만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세 출	9,386	1,554	1,908	2,108	1,908	1,908
기본재산 출연	100	100				
운영 및 사업 지원	9,268	1,452	1,904	2,104	1,904	1,904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18	2	4	4	4	4

6. 작성자 :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관련 법령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① 시·도지사는 제10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시·도 사회서비스원(이하 “시·도 서비스원”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립한 시·도 서비스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시·도 서비스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시·도 서비스원의 설립 및 설립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시·도 서비스원의 사업) ① 시·도 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으로 아동·노인·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의 제공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에 관한 사업
4. 사회서비스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5.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 기관에 대한 재무·회계·법무·노무 등에 관한 각종 상담·자문
6.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7. 지역 내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의 지원
8. 지역 내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의 지원
9. 새로운 사회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10. 그 밖에 시·도지사가 사회서비스 공공성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그 밖에 시·도 서비스원의 사업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성과계약) ① 시·도지사과 시·도 서비스원의 원장은 원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연도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결산과 제34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및 업무성과의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성과계약서를 수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임 원장의 경우에는 임용 후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와 제34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및 업무성과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과 성과계약서의 작성 및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8조(시·도 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 ① 시·도 서비스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 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도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도 서비스원 사업 범위·유형 등의 적정성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 수탁의 적정성

② 시·도 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도 정책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사회서비스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도 서비스원의 임원

5.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 시·도 및 시·도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업무 관련 공무원

④ 그 밖에 시·도 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